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8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박성민·구자근·최보윤

이인선 · 김성원 · 강민국

강승규 • 박상웅 • 고동진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 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 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 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를 "고의"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내거나 보전한"을 각각 "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워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제4호 중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 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u>	<u>고의</u>
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	
에 보전하지 아니한 <u>경우에는</u>	<u>경우를 제외</u>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
전할 수 있다. <u>다만, 추가납부기</u>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낼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u><단서 삭제></u>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u>	② <u>낸</u>
<u>나 보전한</u> 자는 제82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	
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	
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	4
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u>내거나</u>
<u>보전한</u>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
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
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다.

⑤·⑥ (생 략) <신 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저 (생 략)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5. (생략)
- ③ (생 략)

<u>낸</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제
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냈을</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